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임오경·한정애·박 정

이성윤 • 이기헌 • 한민수

임미애 · 강유정 · 김재원

김남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경마·경륜·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, 각종 불법행위 단속,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·군·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.

그럼에도 '레저세'가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로 규정되어 있어, 레 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 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%에 불과한 징수교부 금만을 받고 있어 '레저세'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경마·경륜·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·군·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%에서 10%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단서 중 "다만"을 "다만, 레저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	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
위임) ① (생 략)	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시·도세 징수의	②
비용은 시・군・구가 부담하	
고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	
사・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	
기준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	
도・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	
시・군・구에 징수교부금을 교	
부하여야 한다. <u>다만</u> , 해당 지	<u>다만,</u> 레저세의
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·도	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
세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조	<u>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</u>
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	
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	
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	
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	